-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608호

2021. 06. 21.
행정재경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29. 나상희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30. 행정재경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

2021. 6. 21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임정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○ 구청장의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규정함(안 제4조).

○ 부실공사 신고 접수·처리하기 위한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의 운영과 부실공사의 신고 방식과 서식, 그리고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함(안 제7조~9조).

○ 부실공사의 측정을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한동석)

가. 개정 취지

-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 내용

- 상위법인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2조제9호,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46조제2항에 따라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음.
- 양천구 및 소속기관, 하부행정기관 등을 발주청으로 통칭하여 공사 발주 주체를 명확하게 하였고, 부실공사 방지대책, 공사감독, 부실공사의 신고 등을 규정하였음.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53조에 따라 부실공사 여부를 측정하고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8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공사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다. 종합의견

-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 및 허가 등을 한 건설공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문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-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, 공사감독, 현장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, 별지서식으로 부실공사 신고서를 규정하여 신청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.
- 상위법에 따라 부실공사 방지대책 등을 명확하게 한 것으로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보고드림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9명, 출석의원 6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